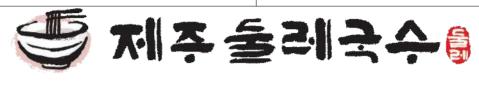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79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 08. 0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07. 22.





정 보 공 개 서

(주) 둘레쿡스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둘레쿡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mark>법률, 회계, 경영</mark>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mark>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mark>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17, 지하1층(창곡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811-1550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 / 1811-155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 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 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 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제주둘레국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17, 지하1층(창곡동)						
㈜둘레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쿡스	2019. 11. 26	2019. 12. 01	정영훈	1811-1550	-			
	법인등록번호	131111-0573731 사업자등록번호 535-86-0154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17, 지하						
대표이사	표이사 정영훈 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영훈	1811-155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 등 제조들리국수 🗓 라 합니다)의 내용
-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등 제주들리국수 🕽	
상	호	⑤ 제주돌레국수 ○○(지역명)점	등 제주율의국수 ()
상	丑	⑤ 제주들레국수	상표 등록번호 : 4013294110000 상표 등록일자 : 2018.02.08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99,050	154,359	44,691	499,668	-34,496	-27,431
2022년	166,266	122,548	43,717	167,034	-477	-973
2023년	113,407	80,538	32,869	148,493	-9,703	-10,847

제주들레국수 당사의 재무상황은 [별점 1]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⑤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원인어구	단단어구 이름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되어ㅎ	정영훈 대표이사	2019. 11. 26~현재	㈜둘레쿡수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관련임원	·0 0년		2017. 07. 22~현재	제주둘레국수 대표	회사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구(당)	
2023. 12. 31	1	1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 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표권자	등록만료일
제주둘레국수	등록상표	2018.02.08.	4013294110000	정영훈	2028.02.08.
이미지			제주율레국	4	

제주들레국수 당사는 상표권자로부터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 설정을 받았으므 로 가맹사업 전개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들레국수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주들레국수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8.08.11.(직영점 영업개시일 : 2017. 07. 22.)

제주출레국수 상기 가맹사업 시작일 및 직영점 영업개시일은 당사의 기존 가맹본부인 개인사업 자 제주둘레국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를 제주들레국수』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주둘레 국수	제주둘레국수	정영훈	2018.08.11.~2019.11.3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길 4-3, 1층 지하1층(창 곡동)
㈜둘레쿡스	제주둘레국수	정영훈	2019.12.01.~2022.03.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913호, 914호(창곡동)
㈜둘레쿡스	제주둘레국수	정영훈	2022.03.04~현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길 17, 지하1층(창곡동)

3. 『틀 제주들레국수》』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ᅰᄌ드레그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ᅵᄱᅮᅗᆁᅕᅮ	한식	국수, 국밥, 고기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 제주 돌레국수 🗓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기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8	ı	6	6	-	6	6	-
서울	-	-	1	•	-	-	-	-	-
부산	-	-	ı	1	-	-	-	-	-
대구	-	-	1	•	-	-	-	-	-
인천	1	1	ı	1	1	-	1	1	-
광주	-	-	1	•	-	-	-	-	-
대전	1	1	ı	1	1	-	1	1	-
울산	-	-	•			-			-
경기	5	5	1	4	4	-	4	4	-
강원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1	•	-	-	-	-	-
세종	-	-	1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1	-	1	-	-	-	-
경북	1	-	1	-	1	1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플 제주들레국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2	1	5	0	0	8
2022	8	0	2	0	0	6
2023	6	0	0	0	0	6

제주들레국수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점 4]을 확인하십시오.

- 6. 『 등 제주 들레국수 🗓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 저출을러국수⊕』외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 제주들레국수●』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 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지역	2023년 말	매결	틀액	상	한	히	·한	비고
시탁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3.3m²당	상한	면적3.3m²당	하한	면적3.3m²당	기포
전체	6	356,212	14,135	533,137	22,167	276,453	11,193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1	•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1	•	•	•	•	•	•	5곳 미만
울산	-	•	•	•	•	•	•	•

경기	4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세종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제주들레국수 상기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23년에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가맹점 POS상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주들레국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제주들레국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 취후들레국수 🗓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 제주들레국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1,714일(약 4.7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 등 제주 출레국수 ●』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는 2023년 말에 『제주둘레국수』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판촉 비용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02-729-6764

● 귀하는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개인인터넷뱅킹 클릭 -> 부가서비스 클릭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클릭 -> 가맹점사업자 클릭 -> 가맹 금 예치를 클릭하여 『(주)둘레쿡스』 예치계좌에 예치대상 가맹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기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기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기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화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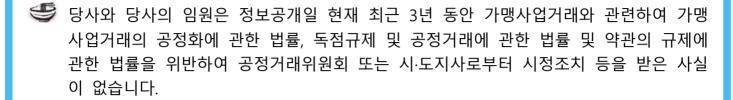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둘레쿡스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예치금 범위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 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 제주 출레국수 ●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예치대상 (보험가입으로 대체 가능)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둘레쿡스	예치대상 (보험가입으로 대체 가능)	확정금액
기타 비용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가맹금

⇒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2,200	브랜드사용 영업권, 영업표지 지적재산권	가맹계약과 동시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마케팅비용	1,650	지역 맛집 연관검색어 등	가맹계약과 동시	마케팅 개시 전	마케팅이 시작 된 이후 가맹본부의 지출 발생
기타비용	2,200	유니폼, 명함, 전단지, 메뉴판, 상호인쇄 봉투 등	가맹계약과 동시	제작 이전	제작 이후 가맹본부의 지출 발생
개점전 교육비	1,650	가맹점개설 및 운영과 영업활동에 관한 교육비	가맹계약과 동시	교육시작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7,700]				

2)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합계]			[1,000]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체결과 동시	물품 대금이나 관리·지원비, 손해배상액 등의 미지급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비고
[합	계]	[8,700]	-
최 초 기	ㅏ맹 금	[7,7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1,000]	

4) 기타비용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 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점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66 m²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금 액	3.3m ² 당 금액	비고
[합 계]	-	-	-	[61,050]	[3,052.5]	-
초도물품비	[별첨 2] 참조	영업시작 7일 전	비치 전 계약취소	[1,100]	[55]	[별첨 2] 참조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인테리어 공사 개시 1일 전	공사 전 계약취소	[37,400]	[1,870]	바닥, 천정, 벽체 등 내부 인테리어 일체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간판 제작 개시	간판 제작 개시	[2,750]	[137.5]	전면 간판,



		1일 전	전 계약수			실사출력물 등
설비/기기/가구	[별첨 2] 참조	물품 공급 3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19,800]	[990]	[별첨 2] 참조
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금 3.3 m² 당 오십오만원(₩550,000)을 감리비로 지급하여야 함						

- 제주출레국수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주출레국수 초도물품비는 가맹점별 점포 규모가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 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제주출레국수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소방설비, 음향기기, 전기증설, 외부닥트, 가스 가설 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주들레국수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맹점사업자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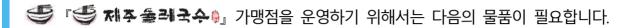
- 제주들레국수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 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피고용인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경영 마인드를 갖춘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이 아닐 것
피 고 용 인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한 사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구분	금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 교육비	연 2회/ 최대 1인 [50]천원		별도통지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 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특별 교육비	가맹본부와 협의	㈜ 둘레	별도통지	전 교육이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 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광고비	전체광고 시 총광고 비용 중 가맹본부부 담액50%제외 금액	쿡스	별도통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 / 사전 약정서 작성시 개별 동의 불요



판촉비	1)공동판촉시 기획비 용은 본사부담, 제작 비용은 기맹점사업자 부담 2)개별판촉시 기맹점 사업자가 비용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 / 사전 약정서 작성시 개별 동의 불요
지연 이자	연 24%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	-	본사 지급 비용 연체시
점포 환경 개선비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재원 참조

제주들레국수 가맹점사업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개별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당사는 자체생산 및 차액가맹금 미수령으로 2023년도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기 재대상 차액가맹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케다 비상 어ဝ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만,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당사가 지정하 는 기간에 대한 총매출액을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 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 제주들레국수』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됩니다.
-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 가맹본부가 『 등 제주 등 라고수 🗐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 저주 ★레국수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 제주들레국수』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 맹점사업자 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개점 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비고
[합	계]	[8,700]	-
최 초 가	맹금	[7,7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	보증금	[1,000]	부가세 없음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기간만료나 해지 이후 7일 안에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 300,000원을 지연배상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동조 제1항의 의무를 완료한 경우, 제15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합의 해지의 경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될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 제주 출레국수 🗦 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귀하가 『→ 제주 ★ 리국수 및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 저 주 출 리국수 🗓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2) 당사가 『 저 조리국수 및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고기국수		
비빔고기국수		
고기국밥		
지슬만두국		
냉고기국수		
참마콩국수		
공기밥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1 2회 인바 . 니며 니저 0 그
돔베고기 소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1/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돔베고기 대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토종순대		
아강발		
매운아강발		
부추물만두		
고기추가		
곱빼기		

제주출레국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주들레국수 당사는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



으며, 당사가 개발한 신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별도로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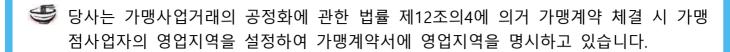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고기국수	8,000		
비빔고기국수	8,000		
고기국밥	8,000		
지슬만두국	8,000		
냉고기국수	8,000		
참마콩국수	8,000		
공기밥	1,000		
돔베고기 소	18,000	제한 없음	판매가격은 지역에 따라
돔베고기 대	28,000		다를 수 있음
토종순대	11,000		
아강발	18,000		
매운아강발	20,000		
부추물만두	6,000		
고기추가	2,000		
곱빼기	1,000		

제주출레국수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해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SET HO HT	가맹본부	계열회사	
고기국수 전문점	제주둘레국수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소재지 반경 1km,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영업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아래에 해당될 경우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 기준에 따라 영업지역을 인정함 1. 백화점, 마트 및 아울렛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백화점, 마트 및 아울렛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2. 타임스퀘어, 가든파이브 등과 같은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복합쇼핑몰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복합쇼핑몰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3. 공항, 호텔, 지하상가, 철도관련 역사, 버스터미널, 휴게소, 관광지 내에 입점한 매장 - 해당 건물만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4. 홍대앞 상권, 서울 명동 상권, 서울 건대 상권, 대구 동성로 상권, 부산 서면 상권 등사회통념상 번화가 상권으로 인정되는 상권에 입점한 매장 - 상권의 범위 및 영업지역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함 5.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나 고가도로로 구분되어 동일 상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하철 출구가 달라 상권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및 신도시 계획으로 상권이 조만간 변경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상권의 구분이나 변경이 예상되는 상권에 입점한 매장 - 상권의 범위 및 영업지역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함)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	재조정 사유 발생 →	영업지역 변경(안)을
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	당사 담당팀 검토	서면으로 통지하고
는 경우	→ 영업지역	30일 이내에 동의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 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 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고객 모집을 하기위한 판촉·홍보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지주들러국수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 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등 당사는 『등 제주들러국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당사는 상기의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 제주 ★레국수●』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시 기간은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 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3호
○ 판매하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4호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제1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 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제35조 제1항 제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 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허용한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 용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금액(교육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접사업자가 영업의 표준화 및 상품, 제품의 판매가격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감독, 통제 및 경영지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설비, 기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로부터 3회 이상 시정요구 를 당한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주 과반수 이상 동의시에도 광고 또는 판촉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단독광고 및/또는 단독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을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 게 공급하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후점포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 정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제1항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제36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 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세36수 세2양 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 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6조 제2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주들레국수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주들레국수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1811-1550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 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 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 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점운영권 이전 완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영업의 자격에 관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상속인에 대해서는 개점 전 교육비를 제외한 가맹금 면제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대리행사 가능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가능	-
업무위탁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 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위탁 가능 여부 통	-



	지 → 업무위탁 가능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 제주 출레국수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국수 전문점(판매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	문의 :
	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1811-1550

- 제주출레국수 귀하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없이 『 제주출레국수 🗐 와 동종 업종(타사 기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주출레국수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2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장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3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습니다.
- →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귀하는 당사와 협의하여 영업일수 및/또는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월별 또는 주별 정기적으로 휴무일을 정할 경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귀하는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주출레국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 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협의하여 결정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담당자 가맹점 방문→청결도 확인→가맹점 방문 기록표 작 성→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담당자 가맹점 방문→매뉴얼 준수 체크→가맹점 방문 기록 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필요 시	문의: 1811-1550
친절도 검사	담당자 가맹점 방문→접객 매뉴얼 준수 여부점검→가맹 점 방문 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 제주들러국수』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단위 광고 또는 판촉

그ㅂ 서거		부담비율		브다 저九	u -	
十 世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담 결사	미고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각 가맹점사업자 균등 분담)	광고 계획 대중매체 광고 공고→가맹점 부담액 명절, Day 이번		
전체 ㅍ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통보→가맹점사업자 완납	행사 (전국 행사)	
판촉 행사	상품판촉 팜플렛 등 제작	기획비용	판촉물부수별로 제작비용 부담	판촉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통보→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손사의 사람에 손성들	
	기타 개별행사	가당	맹점사업자 부담	완납	금지	
소셜커머스,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등	판촉	기획비용	각 가맹점사업자 균등 부담	가맹점 부담액 통보→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완납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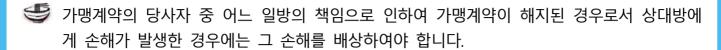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 및 훈련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2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위약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최초가맹금의 10%
 -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최초가맹금의 30%
 -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최초가맹금의 50%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 요 비 용
합 계	-	9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90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8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82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7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74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 험계약 체결	-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 치 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D-74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종 업 원 구 인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D-64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63	
교 육 실 시	- 출퇴근 집체교육	D-6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60	
지 역 홍 보	- 지역 판촉 행사 실시	D-15 ~ 개점전날	
개 점	- 영업시작	D-day	

제주출레국수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주출레국수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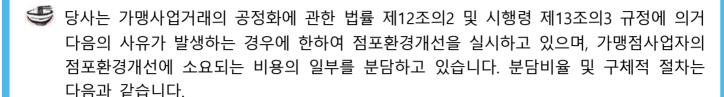
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 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 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 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 비, 인테리어 등 의 노후화가 객 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 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와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
지 않습니다. 인력지원이 필요할 경우 본사 교육 신청을 통해 본사와 협의하여 비용을 지



불하고 인력지원이 가능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위하여 경영지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 리, 위생관리, 교 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문의: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 리, 위생관리, 교 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1811-155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 제주들러국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
매출부진 마케팅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로열티의 50%이상비용 마케팅실시	-
전 지점 마케팅지원	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지원	없음	가맹계약기간	로열티의 30%이상비용 마케팅실시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등 당사는 『등 제주들러국수』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믁o-	1.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관리 교육 2. 상품 조리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정기교육	가맹점에서 순번을 정해 지역을 돌아가면서 실시 가맹점마다 교육비를 걷어, 준비하는 가맹점에게 준비 금액 제공(이에 따라 교육비 변동) 1. 본사교육(회계, 세무, 마케팅, 노하우 등) 2. 가맹점주들과의 대화 및 Q&A 3. 가맹점 매출분석 및 마케팅 보고서 제출 및 토의	출·퇴근 집체교육	연 2회/6월, 12월 실시	필수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본사의 교육 이 필요한 사항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 제주들레국수●』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협의	[1,650]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	개별 산정	최대 1인 5만원	연 2회 실시
특별 교육	개별 산정	실비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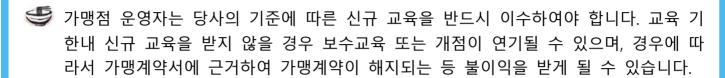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이었던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이었던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이었던 직영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첨 1. 재무상황]





[별첨 2. 가맹점의 설비/ 기기/ 가구 리스트]





[별첨 2. 초도물품 리스트]





[별첨 3.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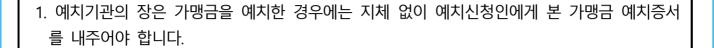
						(並 ¬)
		가맥글	· 아이치신청	서		처리기간
		7100	1 11 11 L O	· · I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	화:)
71 👊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호	화:)
예치가맹	금	₩		(금	운	!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	의 계좌					
	사업거래의 공정화0 와 같이 가맹금을 (법 시행령 :	제5조의7제2항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	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4.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점사업자 현황

No	매 장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